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2가합545220 판결 [양수금 및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정우근

피 고 1. B

2. 주식회사 C

3. D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석

담당변호사 이대성

변 론 종 결 2023. 7. 19.

판 결 선 고 2023. 9. 20.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861,542,380원과 그중 857,165,430원에 대하여 2022. 6. 9.부터 2022. 8. 19.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의 전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5. 3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C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22.

6. 2. 접수 제743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가. 피고 B와 피고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6. 1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22. 6. 14. 접수 제799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

1)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는 2020. 9. 24.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F이 발행하는 무보증 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고 한다)를 인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사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F에 사채금 85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사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아래에서 ‘발행회사’는 F, ‘인수회사’는 E을 말한다).

제4조 (본 사채의 발행조건)

4.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 제2회 무보증 사모사채 금 850,000,000원(금 팔억오천만원정)
5. 사채의 발행가액 : 본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로 한다(액면발행).
8. 사채의 발행수익률 :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 상환일 전일까지 발행일의 발행수익률을

연율로 적용한다(연 3.995%).

9. 사채의 표면이자율 :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위의 발행수익률과 같은 이자율로 한다.

10.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 제2회 무보증사채의 원금은 2022년 9월 24일에 일시 상환한다.

12. 이자지급방법과 기한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아래 이자지급기일마다 이자지급기일 직전일 현재 본 사채의 미상환원금 잔액에 제9호의 이율을 4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급한다. 다만, 지급기일이 대한민국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2020년 12월 24일, 2021년 3월 24일, 2021년 6월 24일, 2021년 9월 24일, 2021년 12월 24일, 2022년 3월 24일, 2022년 6월 24일, 2022년 9월 24일

13. 연체이자 :

(가) 제10호 내지 제12호의 기일에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된 사채의 원금 및 이자 금액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당일포함)부터 실제 지급일(당일 불포함)까지의 경과기간 동안 신용보증기금이 정하는 손해금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제18호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당일포함)부터 실제 지급일(당일 불포함)까지의 경과기간 동안 사채의 미상환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손해금률로 정한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18.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 :

발행회사는 다음 (가)목 내지 (바)목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통보 없이 본 사채에 관하여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

(나) 발행회사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 파산신청,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국제도산절차신청이 있는 때

제10조 (비용부담)

(2)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원리금 상환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본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인하

여 발생하는 채권보전조치비용, 담보권이전비용, 소송비용, 집행비용 등 제반 법적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행회사가 부담하기로 한다.

2) F의 대표이사인 피고 B는 같은 날 이 사건 사채계약에 따른 F의 E에 대한 채무 일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는 2020. 9. 4. E으로부터 이 사건 사채의 원리금채권 및 기타 이에 부수되는 모든 권리를 양수하였다.

나. F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등

1) F은 자금난으로 2022. 3. 24.부터 이 사건 사채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2022. 6. 1. 부산지방법원 2022회합1005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22. 8. 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2) F이 2022. 3. 24.부터 2022. 6. 8.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이자는 7,165,430원이었고,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손해금률은 2019. 4. 1.부터 현재까지 연 8%이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채 원리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가압류가처분 등 조치를 취하면서 그 비용으로 2022. 6. 28.과 2022. 8. 3. 합계 4,376,950원을 지출하였다.

다. 피고 B 소유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설정

1) 피고 B는 2022. 5. 3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B, 근저당권자를 피고 C, 채권최고액을 15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22. 6. 2. 접수 제7439호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2) 피고 B는 2022. 6. 10. 피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B, 근저당권자를 피고 D, 채권최고액을 3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22. 6. 14. 접수 제7990호로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은 2022. 6. 1.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F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채계약의 원금과 2022. 6. 8.까지의 이자 857,165,430원(= 원금 850,000,000원 + 이자 7,165,430원) 및 원고가 그 보전조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376,950원의 합계 861,542,3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F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므로 원고는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가 회생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갖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 F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F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B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채계약에 따른 원리금채무 기타 부수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B는 F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채의 원리금 및 보전조치 등 비용 합계 861,542,380원과 그중 사채원리금 857,165,430원에 대하여는 피고 B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날인 2022. 6. 1.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2. 6.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22. 8. 19.까지는 이 사건 사채계약에 정한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의 전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피고 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건 제1, 2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인 피고 C, D에게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을 감소시켰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을 위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D는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D의 주장

가) 피고 B는 F의 어음 부도를 막고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피고 C, D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 B가 가지고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F 주식(F의 지점은 본점과 달리 회생절차에 있지 않았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 C, D는 F 또는 피고 B와 사업상의 거래관계만 갖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의 채무상태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이 피고 B의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은 이미 성립하고 있었거나(사채원리금채권) 그 기초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보전조치비용채권),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피고 B의 무자력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 8, 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B는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687,854,000원 상당의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원고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 1,866,090,000원의 소극재산을 갖고 있었다.

② 피고 C, D가 피고 B의 적극재산으로 주장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피고 B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관한 것인데, 그 소유주는 피고 B의 처 G이어서 피고 B가 피고들 주장과 같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피고 B는 F의 주주이기는 하나, F은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무렵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고, 지점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개시결정등기가 되어 있지 않지만 지점은 본점과 별개의 법인격이 아니므로, 피고 B가 소유한 F 주식에 별다른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피고 B는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로써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며, 한편 수익자인 피고 C, D의 악의는 추정되는데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깨뜨리기에 부족하다.

① 피고 B는 2022. 5. 11. 피고 D로부터 300,000,000원을 조달하여 2022. 5. 10. 만기가 도래하여 1차부도가 난 F 발행 어음을 결제하였고, 2022. 5. 13. 피고 C으로부터 130,000,000원을 조달하여 2022. 5. 20. 만기가 도래하는 F 발행 어음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F은 그 직후인 2022. 6. 1. 스스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는데, 회생절차개시신청에는 신청서의 작성과 증빙자료의 정리 등에 일정한 시일에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위 무렵 이미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자금조달은 신규자금의 유통을 통하여 채무변제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회생절차개시신청에 앞서 일정한 채무를 미리 정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②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은 F의 회생절차개시신청 하루 전인 2022. 5. 31.에 체결되었고,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은 F의 회생절차개시신청 직후인 2022. 6. 10. 체결되었다. 피고 B는 피고 C, D로부터 무담보로 금전을 차용하였다가 F의 회생절차개시신청 전후로 피고 C, D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바, 이는 회생절차개시신청 직전에 금전을 차용한 특정 채권자에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준 조치이어서 다른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③ 피고 B는 F이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고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기에 이른 즈음에 피고 C, D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얼마 되지 않아 그 변제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인바, 피고 B로서는 자신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로 일반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이 더욱 감소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4)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이상의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을 위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D는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이원석, 판사 구세희, 판사 김부성

부동산 목록

1. 경상남도 산청군 임야 412㎡
2. 경상남도 산청군 임야 410㎡
3. 경상남도 산청군 임야 420㎡
4. 경상남도 산청군 임야 420㎡
5. 경상남도 산청군 임야 420㎡
6. 경상남도 산청군 임야 414㎡
7. 경상남도 산청군 임야 407㎡
8. 경상남도 산청군 임야 399㎡
9. 경상남도 산청군 임야 419㎡
10. 경상남도 산청군 임야 417㎡
11. 경상남도 산청군 임야 416㎡
12. 경상남도 산청군 임야 417㎡
13. 경상남도 산청군 임야 417㎡
14. 경상남도 산청군 임야 417㎡
15. 경상남도 산청군 임야 657㎡

